주류관련 식품위생법령 개정내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주류안전관리TF

■ 식품위생법 개정 배경

주류산업의 환경 변화

정부가 불량식품을 우리사회가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안전한 식품의 섭취가 국민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된 것처럼 주류 역시 안전성 확보는 시대적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값싼 불량 원료 사용, 이물질 혼입 및 수입 식품의 급증에 따라 안전한 주류를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류는 식품임에도 생산·관리 등이 탈세 방지, 사회전반에 걸친 과소비 억제, 막걸리 등 전통주의 원료 수급조절 등과 연계되어 세원관리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주류면허를 관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6월 1일부터 국세청과 식약청간의 MOU체결로 주류의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청으로 이관되었으나 MOU만으로는 효율적인 주류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국민소득 향상 및 웰빙 욕구 증가와 와인 및 막걸리 열풍 등으로 주류도 국민 일상 속에 새로운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다른 식품과 동일하게 주류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류 소비가 늘어남과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류제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생산량의 증대 뿐아니라 '안전하고 품질좋은 주류공급' 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 주류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내용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서「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중요 개정 사유입니다.

'12년 11월 27일[대통령령 제24202호] 개정한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 중「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시행시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기존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령 시행당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되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전관리가 이관된 2010년 6월 1일부터 식약청은 주류 제조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계몽하여 식품제조시설의 기준에 맞게 개보수가 진행 또는 완료되었고 영업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식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영세 업체의 재정적 형편 등을 감안, 식품위생법 제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즉시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설기준을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이내에 갖추도록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선 면허, **후** 등록 체계

주류제조업자는 우선 면허를 받은 후 등록의 절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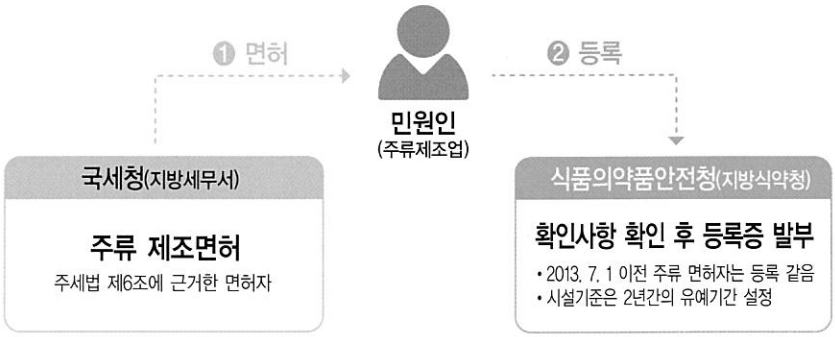

주류 제조면허자가 준수하여야 할 식품위생법의 주요 내용

■ 식품 위생 관련 의무 부과 – 타 식품제조업자와 동일한 내용(요약)

▶ 시설기준(법 제36조 및 규칙 제36조, 별표 14)
– 작업장 바닥·내벽 위생시설, 소독·살균 가능한 취급시설, 냉장·냉동시설, 지하수 시설, 창고, 화장실의 위생 기준 등
☞ 시행시기 : 2년 유예(2015년 7월 1일까지)

▶ 표시기준(법 제10조, 식품등 표시기준 고시)
–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필요시), 기타표시사항 등
☞ 시행시기 : 2014년 1월 1일 부터

▶ 영업자 준수사항(법 제36조 및 규칙 제36조, 별표 16)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금지, 지하수 수질검사 의무

▶ 건강진단 의무(법 제40조 및 규칙 제49조)
– 영업에 종사하기 전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의무

▶ 식품위생교육 의무(법 제41조)
– 영업 등록 전 8시간 교육, 영업 등록 후 매년 3시간 교육

▶ 이물보고 및 증거품 보관 의무(법 제46조 및 규칙 제60조, 별표 16)
– 이물보고, 이물 기록관리, 증거품 보관 의무

▶ 위해식품등 자진회수 의무(법 제45조, 제72조 및 규칙 제60조)
– 자사제품의 위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식품 자진회수 의무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가능(법 제48조)
– 업소가 HACCP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자율)

▶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7조)
– 식약청장은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위해여부 확인 전까지 일시적으로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가능(법 제49조)
– 식품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 자가품질검사 의무(법 제31조 및 규칙 제31조, 별표 12)
– 영업자는 6개월에 1회 항목별 검사를 실시

▶ 품목제조보고(법 제37조 제6항 및 규칙 제45조)
– 새로운 품목 제조시 시작전이나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영업자 준수사항(법 제42조·제44조 및 규칙 제36조, 별표 16)
–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거래기록 작성 및 3년간 보관

(자료제공 : 식약청)